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0나43334 판결 [점유회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9. 15.

판 결 선 고 2021. 10. 20.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단15522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참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원고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2면 제5, 6행의 ‘부동산임의경매기시결정’을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정우혁, 판사 정현서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7층 공동주택

1층 123.28㎡

2층 126.85㎡

3층 126.85㎡

4층 118.81㎡

5층 118.81㎡

6층 118.81㎡

7층 110.71㎡

옥탑층 11.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대 216.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90.9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16.9분의 32.753 끝.

